

인증기관의 행정처분 기준(제18조제4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| 위반행위 | 근거 법조문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| 4차 이상 위반 |
|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가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| 법 제20조 제6항제1호 | 지정 취소 | | | |
| 나.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20조 제6항제2호 | 경고 | 업무 정지 1개월 | 업무 정지 3개월 | 업무 정지 6개월 |
| 다.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| 법 제20조 제6항제3호 | 경고 | 업무 정지 1개월 | 업무 정지 3개월 | 업무 정지 6개월 |
| 라.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| 법 제20조 제6항제4호 | 업무 정지 | 업무 정지 | 업무 정지 | 지정 취소 |

| | 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|
| 수행한 경우 마.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업무정 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| 법 제20조 제6항제5호 | 1개월 지정 취소 | 3개월 | 6개월 | |
|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|